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049 제출연월일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,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 급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운전면허시험"을 "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시험"으로 한다.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운전면허를"을 "운전면허증을"로 한다.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 허증(이하 "운전면허증"이라 한다)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8제2항 중 "관제자격증명시험"을 "제2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관제자격증명시험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전면허시험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7조제2

항 및 제18조제1항(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.

② 제2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관제자격 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제17조(운전면허시험) ① (생 략) 제17조(운전면허시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②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운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 시험-----③ (생 략) ③ (현행과 같음) 제18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 ① | 제18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 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면허증(이하 "운전면허증"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 이라 한다) 발급일을 기준으로 면허증(이하 "운전면허증"이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한다)을 발급하여야 한다.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② ----- 운전면허증을 -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 은 사람(이하 "운전면허 취득 자"라 한다)이 운전면허증을 잃 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 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 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 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- 제21조의8(관제자격증명시험) ① 제21조의8(관제자격증명시험) ① (생략)
 -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 려는 사람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 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
 - ③ ④ (생 략)

_	-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-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—	—	_
_	_	_	_	_	_	_	_							_									

- (현행과 같음)
- ② 제2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 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으로서 관제자격증명 시험----.
 - ③ ④ (현행과 같음)